

2025년 문화예술 민간(기업) 참여 프로젝트 공고문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은 민간기업의 기술 지원 또는 재원 후원을 바탕으로 장애·비장애 예술인(단체)의 예술적 역량을 결합하여 예술적 성장과 확장을 도모하는 <문화예술 민간(기업)참여 프로젝트> 공모를 실시합니다. 이번 공모는 장애·비장애 예술인(단체)와 민간기업의 상생적 파트너십을 통해 예술 창작의 영역을 넓히고, 예술 표현의 확장을 희망하는 예술인들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제공합니다. 장애·비장애 예술인(단체)와 민간기업의 협력으로 이루어지는 이번 프로젝트가 경기도 예술인 여러분들의 창작 활동에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사업 공통 안내

■ 예술인권리보장을 위한 필수이행사항

- 본 사업 선정자(단체)는 예술인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 안전한 문화예술 환경을 위하여 선정자(단체)는 지원금 교부신청 시 안전보건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 진행 시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원 저작자와 협의하여 사용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따라 사업주는 고용보험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에 대해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하고 보험료 납부 등을 이행해야 합니다.

■ 사업 선정 시 의무사항

- 본 사업 선정자(단체)는 선정된 지원사업에 적합하게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연내에 지원금 집행을 완료해야 합니다.
- 사업의 각종 홍보물과 인쇄물을 제작하는 경우, 지원사업명과 경기도, 경기문화재단 후원 내용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합니다.
- 재단이 사업 관리를 위한 현장 모니터링을 요청할 경우 현장 모니터링을 위한 제반 마련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업에 재투여하고 수익금내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지원금 집행 및 정산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고, 지원금 집행 및 정산의 투명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회계법인을 통한 회계검증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경우, 지원금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반드시 지원금 집행내역을 정산하고, 회계검증을 받아 검증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사업 예산 규모에 따른 검증 수수료 기준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회계검사 수수료 단가 가이드라인(2025년)

- 수수료는 자부담금을 포함한 필요 경비 총액 기준으로 산출

구분	예산규모	수수료(원)
1	7백만원 미만	187,000
2	7백만원 이상 1천5백만원 미만	226,000
3	1천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	302,000
4	3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360,000

■ 2025년 주요 변경사항

변경 전(기존)		III	변경 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사업대상	장애 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장애 예술인 및 장애예술단체, 비장애 예술인 및 비장애예술단체
지원내용	기업후원금 1:1매칭 지원 (1천만원 한도)			기업후원 시(기술 및 재원) 도비지원(3천만원 한도) *매칭 비율(최소 30%이상) 필수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지원신청자격

- 예술인 및 예술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한 예술법인 및 단체
- 문화예술시설 운영자
- 기타 해당 사업별 특성에 적합한 예술인 및 예술단체

▶ 지원신청 제외사항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단, 접수 마감일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확인서를 보유 했을 경우 신청 가능)
- 국·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단체 및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지원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관련법령 규정을 위반한 개인·단체
- 접수「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마감일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
-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개인·단체
- 선정 후 경기도 주소지 확인 시 공고일(2025.04.11.) 이후 전입한 개인·단체
- 성희롱·성폭력 등 모든 성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또는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해 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해당 구성원이 포함된 단체(단, 관련 수사 및 기소 등이 없었더라도 성희롱·성폭력 등 모든 성범죄가 명확히 드러난 자 또는 단체, 혹은 그러한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 기관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
- 그 외 신청할 수 없는 대상은 사업별 신청자격 기준 참고

◆ 지원 신청할 수 없는 사업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등)
- 정치적, 종교적 목적의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시설의 건립과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타인의 저작물을 도용, 표절하는 등 저작권 침해 및 기타 위반 사항이 있는 사업
- 기타 공공성에 위배되고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

◆ 공통 유의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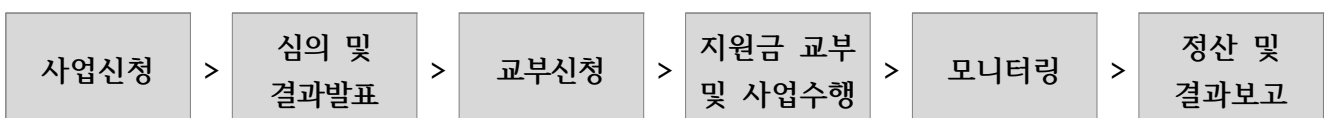
- 심의에서 미선정된 사업은 별도로 안내하지 않습니다.
- 심의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 심의위원 명단과 심의총평 외에 개별적인 미선정 사유를 안내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미달 또는 필수제출자료 미비 시 행정심의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 표절 논란 등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이후라도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일정 기간 공모지원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산하기관(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지역문화재단 등)의 지원사업에 선정된 동일 사업은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선정 이후에도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자료 내 허위 사실이 확인될 시 선정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단체명이 다르더라도 대표자가 동일인일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 단체 대표자가 단체와 개인으로 이중 신청할 경우, 중복 신청으로 간주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내 개인 계정으로 단체 사업을 신청한 경우, 심의에서 결격 처리 됩니다.
- 지원신청서 기재 정보와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의 사업 신청정보가 상이할 경우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신청정보 기준으로 심의합니다.(단체 대표자, 소재지 등)
- 접수 마감일까지 경기문화재단 지원사업 정산보고서를 미제출한 개인·단체는 지원신청 불가합니다.
- 선정 후 주소지 확인을 위한 증빙자료(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증 등)를 제출할 수 없거나, 공고일(2025.4.11.) 이후 전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 결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추진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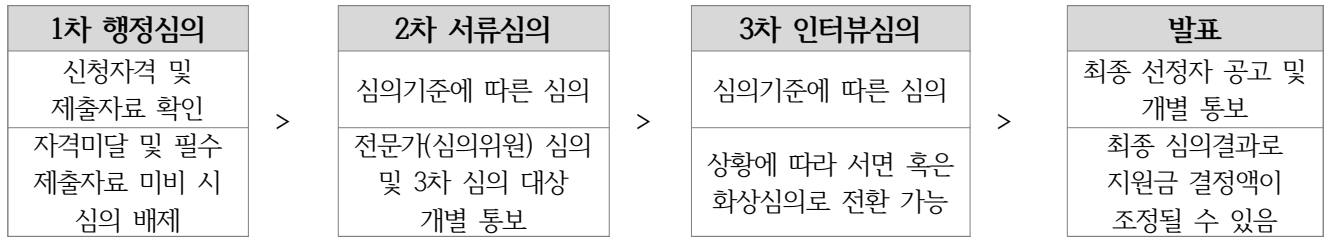
구분	일시	내용
공고	2025.4.11.(금)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ggcf.kr)
접수기간	2025.4.14.(월) ~ 5.13.(화) 17:00	○ 온라인 신청 접수 - 접수처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or.kr)
심의추진	2025.5.14.(수) ~ 6.12.(목)	○ 행정심의, 서류심의, 인터뷰심의 진행
결과발표	2025.6.13.(금) 예정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 (ggcf.kr)
사업기간	2025.6. ~ 12.	○ 선정 후 사업수행 절차 안내 예정

※상기 일정은 재단 내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추진절차



○ 심의절차



○ 지원신청 방법



▶ 재단 누리집(ggcf.kr) > [예술] > [창작지원] > [#사업공고] > 공고문 내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 NCAS (ncas.or.kr)

- 온라인 접수 시스템을 통해 지원신청 구비서류(지원신청서 등)를 업로드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신청서는 재단 누리집 해당 공고문의 한글(HWP) 파일로 된 지정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해야 합니다.

※ 지정서식 외 추가 제출자료는 심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 NCAS 시스템 이용 방법은 공고문 첨부파일의 매뉴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방문 등 서면 접수는 불가합니다.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첨부파일 용량이 50MB 초과 시 파일이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접수마감 당일은 접속자가 몰려 서버가 다운될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기간 내에 지원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접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제출 전에 신청 기관 및 분야를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처

구분	내용	문의처	비고
사업 문의	경기문화재단 예술지원팀	• 031-231-7234 • 031-231-7239	(평일 10시 ~ 16시 /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접수 시스템	국가문화 예술지원시스템 (NCAS)	• 1577-8751 ※ NCAS 고객센터	(평일 9시 ~ 18시 / 점심시간 12시 ~ 13시 제외)

※ 공고문 8 ~ 9페이지에 '자주묻는 질문(FAQ)'이 수록되어 있으니, 정독 후 추가 문의가 있다면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 접수 기간에는 전화문의가 많아 연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사업세부안내

구 분	내 용													
지원내용	○ 문화예술 전반에서 민간기업의 재원, 기술(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예술인(단체)의 예술적 성장 및 확장을 도모하는 다양한 예술활동 프로젝트 지원													
지원규모	○ 선정 예술인(단체) 당 최대 30,000천원 *사업내용 및 규모에 따라 지원금액은 조정될 수 있음(차등 지원)													
신청자격	○ 문화예술 프로젝트 후원 및 사업 진행 관련으로 협의를 완료한 경기도 소재(거주) 장애·비장애 예술인(단체) 및 민간기업(신청자격 세부사항은 하단 ①, ② 내용 참조) ※예술인(단체)와 민간기업이 함께 지원신청 必 ※2025년 중 민간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협력 중인 예술인(단체) 지원 가능 (2025.1.1. 이전에 후원받은 경우 지원 불가) ① 예술인(단체) : 민간기업의 기술 및 재원 후원 협력이 가능한 경기도 소재(거주) 예술인(단체) - 개인 : 경기도 거주(주소) 예술인 또는 장애 예술인 - 단체 : 경기도 소재 예술단체 또는 구성원 중 장애예술인이 소속되어있는 예술단체* *장애 예술단체(㉠또는㉡ 조건 중 1가지 이상 충족) ㉠ 단체 소속 구성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 ㉡ 프로젝트 참여자 중 장애인이 30% 이상인 단체(관객 등 수혜자 불포함) ② 민간기업(소재지 등 지역제한 없음) : 아래 분류된 기업 중 후원의사를 바탕으로 협력할 예술인(단체)이 확정된 민간기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에 속하는 기업 - 대기업: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공시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세부 지원방향 및 공모방침	○ 장애·비장애 예술인(단체)와 민간기업이 협력하여 문화예술 프로젝트 추진 및 결과물 발표 - 문학(행사), 공연예술(음악, 무용, 연극), 시각예술, 전통예술 등 활동(발표, 전시, 공연, 행사) 지원 - 연말(25년 12월 예정)에 진행되는 사업 성과 공유회 참석, 추진 과정 및 결과 발표 필수 ○ 민간(기업) 후원 활성화 매칭 비율(최소 30%이상) 필수													
제출자료	○ [개인] 지원신청 구비서류 <table><tr><th>순번</th><th>구분</th><th>내용</th></tr><tr><td rowspan="4">1 (택1)</td><td rowspan="2">장애 예술인</td><td>필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 선정이후 제출 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선정이후 제출</td></tr><tr><td>선택 신청자 활동자료</td></tr><tr><td rowspan="2">비장애 예술인</td><td>필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 선정이후 제출</td></tr><tr><td>선택 신청자 활동자료</td></tr><tr><td>2</td><td>민간기업</td><td>필수 ① 민간기업 협력 증빙자료 ② 민간기업 후원 협약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 선정이후 제출</td></tr></table>	순번	구분	내용	1 (택1)	장애 예술인	필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 선정이후 제출 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선정이후 제출	선택 신청자 활동자료	비장애 예술인	필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 선정이후 제출	선택 신청자 활동자료	2	민간기업	필수 ① 민간기업 협력 증빙자료 ② 민간기업 후원 협약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 선정이후 제출
순번	구분	내용												
1 (택1)	장애 예술인	필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 선정이후 제출 ⑤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선정이후 제출												
		선택 신청자 활동자료												
	비장애 예술인	필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주민등록초본 - 선정이후 제출												
		선택 신청자 활동자료												
2	민간기업	필수 ① 민간기업 협력 증빙자료 ② 민간기업 후원 협약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 선정이후 제출												

구 분	내 용			
	○ [단체] 지원신청 구비서류			
	순번	구분	내용	
	1 (택1)	장애 예술단체	필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선정이후 제출 ⑤ 구성원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 선정이후 제출
			선택	신청단체 활동자료
		비장애 예술인단체	필수	① 지원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선정이후 제출
			선택	신청단체 활동자료
	2	민간기업	필수	① 민간기업 협력 증빙자료 ② 민간기업 후원 협약서 ③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④ 사업자등록증 - 선정이후 제출
심의계획	○ 3단계 심의 : 1차 행정심의 → 2차 서류심의 → 3차 인터뷰심의 ○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장르별 전문가로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진행			
비 고	※ 경기도 주소지 확인 기준 서류 - 개인: 주민등록초본 - 단체: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공통] 예술인 신뢰 존중 및 지원 절차 간소화를 위해 경기도 주소 증빙 자료 및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은 선정결과 발표 이후에 제출합니다. * [단체] 증빙서류에 기재된 주소가 경기도여야 합니다. (주민등록초본상 대표자 주소지와는 무관) ※ 지원절차 간소화를 위해 협력 민간기업의 사업자등록증은 선정결과발표 이후에 제출합니다. ※ 제출되는 사업자등록증은 개업 연월은 공고일(2025.4.11.) 이전이어야 하며, 발급 연월은 결과 발표일(2025.6.13.) 이후여야 인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 공모내용

1	Q. 어떤 장르가 지원신청을 할 수 있나요? A.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장르 전체를 지원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제①항 제1호]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
2	Q. 비장애 예술인(단체)으로만 구성된 단체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네, 본 사업은 장애 예술인(단체)이 아닌 비장애 예술인(단체)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Q. (개인) 경기도에 거주하지 않아도, 경기도 소재의 작업실을 소유하거나 레지던시에 소속되어 있을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할까요? A. 경기도 내 예술인 지원 확대를 위해 공고일 기준 예술인 본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경우에만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4	Q. (단체)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이 없는 프로젝트성 단체인데 지원신청이 가능할까요? A. 단체로 지원신청을 희망하는 예술단체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5	Q. 지원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사업내용과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차등지원), 선정 예술인(단체) 당 최대 3,000만원을 지원합니다.
6	Q. 사업 지역은 경기도로 한정되어 있나요? A. 네, 본 공모 사업을 통해 발표되는 프로젝트(결과물)는 경기도 내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7	Q. 지원신청서에 작성한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이 추후에 일부 변경되어도 괜찮나요? A. 지원신청서에 기재된 ‘미확정’ 참여 구성원은 50% 이내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정’구성원은 변경이 불가합니다.

■ 지원규모 및 예산편성

1	Q. 예산집행계획에 인건비 항목을 편성할 수 있나요? A. 네, 인건비 예산의 편성이 가능합니다. 단,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상근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편성할 수 없으며, 인건비 집행에 대한 원천세 신고 및 납부는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2	Q. 예산집행계획에 대표자 사례비 또는 본인 기획비 항목을 편성할 수 있나요? A. 네, 대표자(본인)가 실연 또는 창작 등 실제 사업 수행에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편성이 가능합니다. ※ 대표자 사례비(본인 기획비) 편성 한도: 지원금의 20%(최대 200만원 한도) 이내
3	Q. 자부담은 반드시 편성해야 하나요? A. 자부담 편성은 의무사항이 아닌 권장사항입니다.
4	Q. 추후 선정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표 장소나 일시 및 예산 등을 변경할 수 있나요? A.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일부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규모(출연진, 관람객 수, 회차 등)나 내용(작품, 프로그램 등)을 사전 협의 없이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선정 취소나 선정액 감액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민간기업협력

1	Q. 협력 가능한 민간기업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 후원 가능한 기업은 아래 분류된 기업(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중 후원의사를 바탕으로 예술인(단체)와 협력할 의향이 있는 기업입니다. ①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 ②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조에 규정된 중견기업의 범위 기준에 속하는 기업 ③ 대기업: 공정거래법 제11조의 4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가 당해 공시하는 공시대상 기업집단(대규모 기업집단) 또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2	Q. 협력할 민간기업은 예술인(단체)가 직접 섭외해야 하나요? A. 네, 본 사업은 신청을 희망하는 예술인(단체)이 직접 민간기업과 협력하여 후원 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고 확정된 후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3	Q. 민간기업에서 어떤 사항을 후원받을 수 있나요? A. 본 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예술인(단체)는 기술, 재원, 기타 세 가지 분야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술 및 기타 분야의 후원을 받을 경우 후원 내용의 규모를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① 재원: 금액 후원 ② 기술: 민간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체 기술, 프로그램, 툴 등 ③ 기타: 물품, 제품, 재료, 공간 등의 후원
4	Q. 공모 방침 중 ‘민간(기업) 후원 활성화 매칭 비율(최소 30%이상)’은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A. 네, 필수 조건입니다. 재단에 신청하는 지원금의 최소 30% 이상을 민간 기업 후원으로 매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재단에 지원금을 1,000만원을 신청할 경우, 기업으로부터 최소 300만원 이상의 후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5	Q. 민간기업의 소재지 제한이 있나요? A. 아니요, 협력하는 민간기업의 소재지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6	Q. 민간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나서 이에 대한 일부 비용을 집행해도 되나요? A. 아니요, 협력 기업으로부터는 후원을 받을 수만 있습니다. 지원금으로 인건비, 용역비 등을 집행했을 경우, 상황에 따라 선정 취소나 선정액 감액 등의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7	Q. 1개 이상의 민간기업과 협력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다만, 협력을 희망하는 기업의 수만큼 ‘후원 협약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8	Q. 이미 민간기업으로부터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지원신청이 가능한가요? A. 2025년 1월 1일 이후 ~ 접수 마감일까지 민간기업의 후원을 받을 경우, 지원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기존에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를 이어 진행하는 부분은 어려우며, 후원받은 재원 또는 기술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신규로 운영하거나 발표해야 합니다.
9	Q. 민간기업 필수 제출 자료 중 하나인 ‘민간기업 협력 증빙자료’는 기업이 직접 작성해야 하나요? A. 네, ‘민간기업 협력 증빙자료’는 기업의 담당자가 직접 작성해주셔야 합니다.